

의안 번호	2003	<b>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30.(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9. 30.(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10. 17.(월)

## 2. 제안이유

- 민선8기 구정목표인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의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정책자문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의 세부사항 등을 정비하여 기존 정책자문단의 기능 강화와 내실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나. 자문단 명칭 변경: 정책자문단의 명칭을 종갓집 정책자문단으로 변경  
(안 제1조~제2조)
- 다. 자문단 위원 수 확대와 위원 구성분야 구체화(안 제3조)
- 라.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책임성 확보(안 제6조)
- 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총괄 간사 변경(안 제8조)
- 바.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7조)

## 4.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 5.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목표인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반영하여 정책자문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 구성내용 등 정비 및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